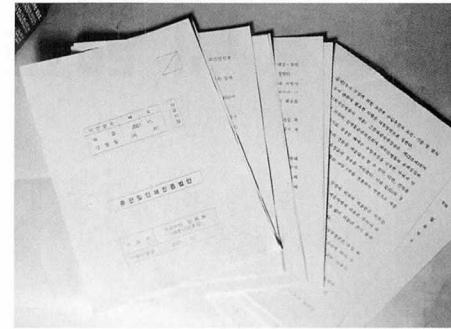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 발의로 도서정가제 논란 다시 불거져

법안 통과되면 출판유통 개선될 것 기대…

10% 할인 한도제에 온라인서점 반발해



지난 11월 13일 여야 국회의원 28명의 공동명의로 발의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출간된 지 1년 이내 도서에 대해서 10%까지만 할인할 것과 이를 어기면 3백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판계나 서점계는 이 조항에 대해 대부분 반색하고 있지만 온라인 서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국회에 제출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의 통과를 놓고 출판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새천년민주당의 심재권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8명이 의원입법으로 공동발의한 것. 이 법안은 그동안 마땅한 기준이 없어 ‘제살깎이’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출판유통 문제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판계와 서점계는 대부분 자신들과 협의를 거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출판유통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서점들이 이 법안에 반발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안티운동’을 벌이고 있어 해묵은 도서정가제 논란을 재연시킬 조짐이다.

출간 1년 이하의 책은 10%까지만 할인 가능해

이 법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책값 할인 문제와 관련해 “서점 등 간행물 판매업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행물을 정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벌칙조항으로 “정가의 10%를 초과하여 판매한 자에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문화한 부분이다. 발행한 지 1년이 넘은 간행물 등은 할인율의 제한

을 받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출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 법안에는 “출판사가 자기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자기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해당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자기 출판사나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해당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사재기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다.

과거에도 이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지난 1999년 11월 ‘도서정가제 유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안이 길승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7명 이름으로 발의된 적이 있었다. 그 주된 내용은 도서를 할인판매하면 2천만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서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000년 9월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간행물 정가 판매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이 법안은 각하됐다.

이번 법안은 ‘출판사 및 인쇄소 설립에 관한 법률’을 없애고 청소년보호법의 울타리 안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온라인 서점들은 ‘10% 할인 한도제’에 반발해 인터넷에서 입법저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법안 복사본(위)과 서명운동 사이트.

에 있던 ‘간행물윤리법’을 출판관련법에 포함시키는 한편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에 관한 조항도 포함시켰다. 그동안 도서정가제로 고수해오던 조항을 출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할인범위를 10% 이내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탄력적인 도서정가제인 셈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종진 사무국장은 “지나친 책값 할인 경쟁은 책값을 양등시키고 나아가 책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10% 한도는 도서정가제의 차선책이다. 정가를 지키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꾸준히 도서정가제를 주장해온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책값에 대한 독자들의 불신이 책에 대한 불신으로 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런 원칙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무엇보다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앞으로 출판계는 점점 나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온라인 서점, 입법 저지 투쟁에 돌입해

이 법안이 나오기까지 논의 과정에는 대한출

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출판·서점계 단체와 예스24, 알라딘, 와우북 등 온라인 서점 대표가 참여했다.

출판·서점계는 이 법안에 대체로 동의했지만, 온라인 서점측에서는 '배송료'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안 통과를 앞두고 온라인 서점들은 '배송료' 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입법 자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예스24, 알라딘, 모닝365, 북스포유, 와우북, 인터파크 등 6개 온라인 서점들은 지난 11월 21일 '인터넷 서점 고사시키는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의 독소조항 10% 한도제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도서정가제 입법 저지를 위한 인터넷서점대책위원회(가칭)'를 조직해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 서점들은 이 성명서에서 "책값 할인 10% 한도 조항은 업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 원리와 양질의 도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칠저히 무시한 폭거이자, 법률을 동원한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인터넷 서점의 할인이 출판유통의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형 서점이 처한 위기는 지역 대형서점의 등장과 경기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서적 도매상의 부도위기는 우리 경제의 가장 낙후된 관행인 어음결제와 불합리한 유통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 서점의 할인 정책이 책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출판사들은 자체 마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출고가를 정하고 있어 출판업계가 인터넷 서점으로부터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인터넷 서점의 할인에 따른 책값 인상 압력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맞섰다. 이들 온라인 서점들은 이번 10% 할인 한도제가 입법화되면 오히려 "책값 인상의 주범이 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인 입법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지난 11월 22일에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청원했다. 알라딘 조유식 대표는 "온라인 서점과 완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발의됐다. 심재권 의원이 발의 전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10% 할인 한도제 반대서명 페이지에는 11월 23일 현재 10,264명이 서명했으며 97.1%가 반대의사를 밝혔고 2.9%만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기록돼 있다. 예스24 인터넷 서명 페이지에는 심재권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이 링크돼 있어 네티즌들의 비난성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한편 네티즌들끼리의 도서정가제 찬반논쟁도 뜨겁다.

반사이익 해체로 온라인 서점들의 위기감 커져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과 관련해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연구원은 "독자들 입장에서는 책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할인율을 법제화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가제라는 원칙이 없이 오프라인 서점들까지 가세해 너도나도 할인을 하다 보면 책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할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서점들의 입법 저지 움직임에 대해 백연구원은 "그동안 온라인 서점들은 정가제라는 우산 속에서 제도와 이반되는 할인이라는 전략으로 성장해왔다. 10% 할인 한도제가 법제화되면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의 경쟁 상황이 동일해져 온라인서점들의 반사이익은 해체될 것이고 급성장할 수 있는 조건도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라인 서점의 할인은 그동안 출판계의 문제로 지적돼왔고 제살깎기식 무한경쟁은 온라인 서점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같은 인터넷 서점의 지나친 할인이 문제가 돼 한국출판인회의 소속 출판사들이 인터넷 서점에 공급중단을 결의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3월 26일 출판사들과 인터넷 서점들이 모여 '10+5%' 할인 적용에 합의했지만, 북파크의 합의 무시로 인터넷 서점들은 다시 무한경쟁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온라인 서점들 간의 할인율 적용에 대한 기본 원칙이 없어 신규 온

라인서점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고 이것이 다시 무한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임종은 사무국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소규모 인터넷 서점부터 무너질 것"이라며, "30% ~40% 할인하면서도 인터넷 서점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할인율을 낮춰 조정하면 이익이 늘 텐데, 이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책값 10% 할인 한도 조항이 포함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출판사, 도매서점, 소매서점 간의 불신이 수그러들고 출판유통질서가 확립돼갈 것이라는 것이 출판계와 서점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법안에 주목하고 있는 출판계나 서점계는 이 법안이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대부분 낙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 박형동 사무관도 "이 법이 통과되면 출판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도서의 특수성이 감안되면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심의와 규제 조항 담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

그러나 한편에서는 책값 10% 한도제만 부과돼 다른 조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에 속해 있던 간행물윤리법이 이번 법안에 포함돼 전통법안이 아니라 심의법안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외국간행물 수입추천 등에 대한 조항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이 법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장근 기자